

이 홍용
건국대 사회대 교수, 법학박사

獨逸에 있어 教會와 國家의 관계

이 글은 본회 청년모임 주최 제1회 기독교청년연구포럼에서
97.1.27에 발표된 것이다.

1) 처음에

教會는 사회 속에 존재하며 그 구성원들도 정치와 경제 및 문화의 모든 사회과정에 참여하며 생활한다. 教會가 사회나 國家와 더불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教會는 국가사회의 정치적 조직단위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國家와 教會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어느 한 편의 우월성에 기초한 결속의 형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분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주어진 복합적인 역사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現代教會는 2천년에 걸친 역사적 경험과 함께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속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있다. 그야말로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중층적으로 진행된 거대한 혁명을 통하여 형성

된 현대사회의 역동성 가운데 現代敎會가 존재하고 있다. 敎會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 사회는 기술과 학문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인공적으로 형성되어진 제2의 창조물로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틀로서 자리잡고 있다. 인류가 이러한 고도의 정보지식사회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건설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그에 의해 광범위한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를 조직하고 통합해 나갈 뿐 아니라 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國家와 세속화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에 깊이 관계하고 있는 사회적 단위체로서의 敎會, 이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 과학적 연구가치가 있다 하겠다.

國家와 敎會가 그 기원, 목적, 제도, 기능 등 본질상의 차이¹⁾를 갖고 있음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돌려라”는 예수의 가르침 이후 기독교 2천년의 역사는 國家와 敎會의 대립과 갈등 및 협력이 불연속적으로 교차하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國家權力을 담당하는 통치자가 敎會 본래의 영역에 간섭하거나 신앙자에게 침해를 가할 때 敎會는 그러한 統治權力에 불순종하거나 순교로써 항거하였고 반대로 國家가 敎會를 보호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는 이에 순종하거나 협력하였다. 敎會와 國家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개관할 때 그 관계는 일음 國家가 어떻게 敎會를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종래 기독교와 國家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 신앙과 敎會의 기원만큼 오래된 것으로 주로 기독교 윤리학이나 교의학 또는 역사신학의 범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國家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나 그 관계를 다루는 신학적 입장이나 국가학적 논의들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은 아니지만

1) 국가는 하나의 자연법적 제도로서 그 형태나 내용이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목적이 세속적 공익의 실현에 있다면 교회는 초자연적 질서로서 인간의 영적 구원이 목적이다.

國家와 敎會의 관계에 긴밀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유럽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 발전해 온 獨逸이라는 특정 國家에 있어 敎會와 國家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의 獨逸에 있어 國家와 敎會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 게르만 민족의 기독교화

기독교의 급속한 전파로 기독교화된 서로마제국이 게르만의 민족침입 특히 오스트로고트(Ostrogoth)족의 오도아케르(Odoacer)에 의해 멸망한 후(476년) 그리스-로마 문명은 심한 타격을 받게되어 정치와 경제 및 사회면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 敎會 역시 敎會 組織이나 敎會 生活 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었다. 그러나 게르만의 로마제국 정복이 인종적으로는 그리스 및 로마에서 게르만 중심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게르만의 기독교화를 통한 기독교의 확장을 의미한다. 독일 게르만의 복음화는 '독일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영국인 보니 페이스(Boniface) 또는 빈프레드(Winfred)라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716년 윌리브로드 선교단에 합류하여 네덜란드 선교사역에 참여하였고 718년 로마에 가 이방인 선교의 허락을 받아 독일선교를 시작하였다. 그후 732년 그는 마인쯔의 대주교가 되었다. 흔히 중세 초기라고 할 수 있는 6C에서 7C에 걸쳐 지중해 주변에 머물던 고대 기독교가 알프스를 넘어 중부 유럽과 오늘날의 영국 나아가 북구 스칸디나비아 일대에까지 확대되었다. 게르만 민족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민족은 Frank족으로서 Frank왕국을 세운 클로비스(Clovis: 465-511)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로마교황과 세속군주의 제휴가 시작되었다. Frank 왕국은 754년 로마 교황과 일종의 방위조약인 우호동맹을 맺고 왕국의 일부 영토를 교황에게 줌으로서 교황이 세속군주로서 교황령 또는 교회국가를 지배할 뿐 아니라 중세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반면

에 세속군주의 지원이 필요했던 로마 교황도 Frank족의 왕들에게 '로마의 보호자'(Patronus Roma-norum)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등의 보호를 통하여 주위지역에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전파해 나갔다. Frank 왕국과 로마 교회의 동맹은 800년 교황 Leo III세가 과거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한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에게 로마제국 황제의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강화되었다. 그러나 7C 이후 진행된 문화적이며 민족적인 분열과 지방분권적인 봉건제의 한계는 대 제국을 다스리고 통합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고 루드비히 I세 때(843년)에는 제국이 셋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제국의 정치적 분열 이후 독일권의¹⁾ 동프랑크 왕국이 10C부터 독일왕국을 형성했는데 이 왕국은 國家的 統一性이 약한 部族國家의 느슨한 결합의 형태를 취하였다. 10C 중엽 로마교황으로 부터 로마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Otto대제는 敎會組織을 이용하여 부족공들의 세력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려 하였다. 즉 Otto대제는 궁정교회에 소속된 성직자들을 주교나 대주교로 임명하여 봉토를 수여하고 토지 지배권이나 촌락 지배권등의 공적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부족공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敎會의 행정권력이 커짐에 따라 왕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 권력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Otto대제 이후 교회를 정치세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Heinrich III세 (1039-1056)시대에 와서는 國家-敎會 체제는 오랜 기간의 혼란을 끝내고 유럽 중세질서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중세 게르만의 일반 장원 영주들이 國家法이나 部族法 또는 영방법(Landrecht)에 의한 國王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데 비하여 敎會나 수도원에 속한 장원의 경우에는 왕의 보호와 간섭을 받게 되어 國家가 장원재산에 대한 상위재산권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왕의 보호와 불입권(Immunitaet)의 결합이 敎會勢力을 봉건제도에 편입시킴으로써 왕의 성직자 서임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

1) 'deutsch'라는 표현은 8c초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diot(Volk)라는 말에서 연유한다. 독일이라는 나라이름이 스웨덴에서는 Tyskland, 이탈리아에서는 Tedeschi, 영국이나 러시아에서는 Germany, Germanija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Allemagne, Alemania로 각각 달리 불리는 것은 독일민족이 다른 민족과 달리 민족적 통일성을 갖지 못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결과로 敎會勢力이 王權의 강력한 지주가 되었다. 國家와 敎會의 이와 같은 협력체제는 1075년 개혁주의자¹⁾였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Heinrich IV세로부터 주교 및 수도원장의 서임권을 빼앗고 나아가 그를 파면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황은 왕에 의한 성직임명이 敎會法에 어긋나는 것으로 선언함으로써 國家權力으로 부터 敎會自律權(Eigenkirchenrecht)을 되찾고 國家敎會制度(Staatskirchentum)의 기초를 부정하였다. 교황에 의한 황제의 파문과 카논사의 굴욕은 왕을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로 보는 게르만 전통의 믿음을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왕은 신성을 잃어버린 단순한 세속적인 지상의 왕으로 격하되었다. Heinrich IV세 이후 왕의 세습적 정통성은 더이상 유지되지 못하였고 선제후가 형식적 왕으로만 군림하는 영방적 분립화가 가속화되었다. 한편 주교선출권을 비롯한 성직임명권이 敎會로 옮겨지면서 주교들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이러한 주교들은 일정한 主權(Hoheitsrecht)을 갖는 國家封臣(Reichsvasallen)으로서 세속적 귀족봉신들과 함께 신분적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직제후로 발전되어 나갔다. 이러한 중세독일의 정치적 구조 변화는 13C 말 정치생활의 무게가 國家로부터 영방으로 완전히 옮겨짐으로써 분립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독일은 더이상 통일적인 나라가 아닌 선출된 왕의 명목적 종주권 아래 19C 초까지 크고 작은 2천여 개에 달하는 영방국가(Territorialstaat)로 존속하게 되었다.

중세교회는 암브로스(Ambrose:339-397)나 어거스틴(Augustine: 354-430)같은 사람들의 신학에 근거하여 정치에 직접 개입할 뿐 아니라 國家를 지배하는 교황주의 정치형태를 실현시켰다. 암브로스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황제의 敎會支配를 시정하려하였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는 데살로니가 시민학살에 책임을 지고 공적참회를 요구하였으며 황제가 敎會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제국이라는 정치체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믿던 유세비우

1) 11C 중엽 클뤼니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운동은 성직매매등의 교회내 부패관행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국왕의 성직임명권의 박탈을 목표로 하였다.

스 같은 사람들의 낙관적 정치신학을 비판하면서 종말론적이고 실제론적인 역사이론을 전개했다. 어거스틴의 國家에 대한 사고는 유럽 國家思想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에 의하여 구성된 國家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고 그 존재 목적이 반신적인 인간들의 죄악을 억제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政治的 및 法的인 외적 질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權力の 강제력은 지상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고유의 존재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國家는 그 스스로 자체의 正義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正義를 빌려 설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正義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속해있는 지상의 나라 즉 國家의 사명은 “신의도성”을 닦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가 敎會에 종속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國家와 敎會는 서로 혼합되어 혹은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관계 때문에 敎會는 세상과 國家를 새롭게 하고 변혁시킬 사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5C 말 교황 게라시우스(Gelasius: 492-496)도 양권력이론(Zwei-Gewaltenlehre)을 내세워 이 세계가 황제의 세속적 國家權력과 교황의 영적 權력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황제들의 영혼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영적 종교권력이 결국 세속적 國家權력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콜라 신학의 대표적 신학자로 중세신학의 완성자라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 1225-1274)는 교황주의적 신정정치학의 원리를 수립하였다. 아퀴나스는 자연질서에 속하는 國家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기 때문에 國家의 절대권위는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의 제도적인 면을 강조하여 교회를 집합적인 기관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 속에 있다(Universals in re)고 주장함으로써 계급구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중세적 성직제도의 모순과 폐해를 혁신하고 복음의 핵심을 설교함으로써 거대한 종교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게 된 종교적 운동이었지만 그 당시 대두되던 유럽의 내셔널리즘¹⁾을 후진적이었던 독일의 선후왕들에게도 전파하는 촉매적 역할을 하고 教會와 國家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는 정치사회적 운동의 요소도 내포하고 있었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는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외부질서를 다스리는 세속적 國家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상의 두 統治機關인 教會와 國家의 기능과 영역을 혼돈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 된다. 중세교회처럼 세상을 복음으로 통치하려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무력으로 통치하려는 것은 이 구별된 두 왕국을 하나로 섞는데서 온다. 세속적 질서로서의 國家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과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한다. 루터에 의하면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는 國家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教會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방편이고 수단이지만 이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루터는 종래의 중세적 國家觀으로 부터 탈피하여 國家의 고유한 獨立성과 自主성을 강조하여 教會에 의한 國家權力의 지배, 다시 말하여 神權政治를 배격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이의 독립 또는 상호 불간섭은 전통적으로 중세교회에 의하여 속박을 받던 통치자들을 해방시키고 아울러 教會 역시 기독교를 부패시켰던 여러 방해세력으로 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루터의 教會 및 國家에 대한 사상은 중세적인 통합교회나 기독교적 세계 제국의 이념이 약화되어 가는데 촉매역할을 하였고 종교적 權能과 세속적 國家權力 사이의 간격을 벌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6C의 이와 같은 상황변화는 종래와 다른 法理論과 國家理論²⁾을 요청하게 되었다.

1) 중세질서를 타파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한 민족의식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경우 완전한 주권행사를 하려는 순수한 민족국가를 형성케 함으로서 유럽을 총괄하는 단일제국이라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2) N.Machiavelli(1469-1527), H.Grotius(1583-1645), T.Hobbes(1588-1679) 같은 국가사상가들의 철학적 이론구조의 기본발상은 국가권력을 세속화하는 Glaubensspaltung을 반영한 것이다.

3) 중세 獨逸의 教會와 國家

중세 기독교사는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르네상스 人文主義의 편견과 달리 새로운 유럽의 담당자가 된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화되고 유럽세계에 기독교 운명공동체사회가 형성된 의욕에 불타던 시대였다. 지중해 주변에 국한되던 기독교가 알프스를 넘어 중부유럽과 영국을 비롯한 북부유럽까지 확대 된 중세 1기(4C-10C)를 거쳐 교황을 정점으로 기독교 지도력이 절정에 달했던 중세 2기(12C-13C), 그리고 중세의 붕괴기라 할 수 있는 중세 말기(14C-15C)로 중세 교회는 구별된다.

중세 獨逸에 있어 봉건영주나 귀족들이 教會에 대한 지배권을 서서히 장악하게 되는 14C는 憲法史的으로 볼 때 立法國家(Gesetzgebungsstaat)의 등장배경이 된다. 왜냐하면 法律을 통한 세속적 지배권의 장악이라는 것은 보다 더 높은 도덕적 권위에 의하여 인간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15C에는 교황의 教會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教會의 制度나 기구가 領土國家(Territorialstaat)¹⁾의 정치체제 속으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영주는 教會保護權(Patronatsrecht)이나 기독교를 배경으로 성직자나 승회원을 임명하거나 수도원을 감독하고 개혁해 나갔다. 봉건영주가 누리는 教會에 대한 후견권(Vogteirecht)은 教會를 지키고 보호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배하는 法的 裝置의 역할의 의미하기도 했다. 세속귀족이나 영주의 교회지배는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내면 생활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1526년 Speyer 帝國議會는 종교문제가 영주의 고유책임임을 밝힌 이후 종교분쟁은 자연히 영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영주의 지배의사가 國家秩序(Landesordnung) 뿐만 아니라 教會秩序

1) 독일에서 영방국가의 맹아는 12C의 영방고권(Landeshoheit)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영방고권 자체도 다양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통일적 성격을 찾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영방군주가 통일된 사직권(Obrigkeit)을 획득하기 시작한 15C 이후 영방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1648년 Westfalen조약으로 영토법(ius territorii)과 주권법(ius superioritas)을 획득함으로써 영방국가로서의 국가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본다.

(Kirchenordnung)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후 제후가 *summus episcopus*로서 教會 최고의 수장이 되는 國家教會(Landeskirche)형성의 기초가 되었다.¹⁾ 즉 教會 문제에 관하여 제후나 제국도시의 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루터파교회는 영방제후의 지지를 통해 그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宗教와 政治秩序의 결합은 영주가 종교적 진리의 수호자라는 자각이 강했던 루터교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 - 루터의 사상과는 모순되게도 -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속제후는 자기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최고의 주교로서 영내 教會를 지배하게 되었다. 교리나 宗教的 裁判, 나아가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중요문제 이를테면 혼인등의 문제에 대한 결정도 영주에게 귀속되게 되었다. 제후의 행정, 사법, 군사, 제정등의 세속적 권한은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平和會議 이후 教會에까지 점차 확대되어 갔다.

16C초의 獨逸社會 변화와 종교개혁 및 농민전쟁에 대하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고 있다. 엥겔스로부터 비롯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1517년 종교개혁과 1525년 독일 농민봉기는 초기 부르조아 혁명²⁾으로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제후의 종교개혁(Fuerstenreformation)이라면 문짜의 종교개혁은 인민의 종교개혁(Volksreformation)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산계급의 사회, 재산공유의 사회로 파악함으로써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 넘은 영원한 프로레타리아의 선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엥겔스의 입장은 2차 대전 후 동독의 역사학자 M. Steinmetz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동독의 역사적 정통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³⁾ 그러나 문짜가 “우리의 제후와 영주들이 강도와 도적이 되어 땅에서 성장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 물 속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서 성장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공동의 소유가 되어야

1) Vgl. in: G. Oestreich, *Verfassungsgeschichte vom Ende des Mittelalters bis zum Ende des alten Reiches*, 6.Aufl., 1966, S.74.

2) F.Engels, *Der deutsche Bauernkrieg*, Berlin, 1973.

3) M.Steinmetz, T.Muentzer in der *Forschung der Gegenwart*, in: Ders.(Hrsg.), *Der deutsche Bauernkrieg und T.Muentzer*, 1975.

한다”¹⁾고 했을 때 이러한 주장이 갖는 중세적 농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념적 필요에 따라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다. 그밖에 1970년대에는 社會史(Gesellschaftsgeschichte)의 등장과 함께 16C 초의 사회를 농촌 공동체의 계층분화, 도시의 발달, 종교 개혁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일군의 학자들도 있었다. 아무튼 16C의 獨逸 社會에 나타난 영방국가화 경향²⁾과 중세장원의 구조변화 및 사회 발전 속에서 1517년의 종교개혁이 1525년 농민봉기를 비롯한 國家社會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분명하다.

4) Preussen문화투쟁기의 敎會와 國家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 이후 獨逸은 크고 작은 300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고 신성로마제국이 명목상으로 통치하고 있었으나 國家的 權威는 거의 존재하지 못했다. 1701년 건립된 Preussen 王國은 원래 프로테스탄트 國家로 출발하였지만 폴란드의 여러 지방이 합병되고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난 이후 국경이 변동됨에 따라 인구의 30% 이상이 카톨릭 敎會에 속하게 되었다.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의 물결이 밀려오자 Berlin에서는 憲法의 제정과 市民的 自由의 保障 및 민족의 통일을 요구하는 自由主義的이고 民族主義的인 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獨逸의 統一은 이미 존재하는 獨逸 聯邦의 강화를 의미하였다. 1848년 이전의 개별 國家들의 憲法에서는 각기 다른 신앙형태들을 구별하고 있었고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믿는 시민들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었지만 다른 여타의 기독교적 신앙고백이나 비기독교인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다. 1848년 혁명은 모든 신앙고백의 평등성을 촉발시켰으며 이러한 원칙은 그후 獨逸

1) G.Franz,(Hrsg), T.Muentzer, Schriften und Briefe, 1968, S.329.

2) 독일 농민전쟁시 약 2,500개의 영방국가가 존재했고 그 중 2,000여개는 250평방 마일의 지역영방(Territorialstaat)이었다.

개별 領邦國家들의 憲法 속에서 인정되게 되었다.¹⁾ Frankfurt 憲法이 제정되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혁명정책으로 카톨릭 敎會가 自由를 얻었다.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 비스마르크가 統一政策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1866년 오스트리아와 1870년 프랑스세력을 축출하였고 1871년 Preussen 국왕 빌헬름 1세를 통일제국 황제로 즉위하면서 新敎 國家임을 선포하였다. Preussen에서 카톨릭은 소수였지만 비스마르크는 國家 統一政策을 수행해나가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카톨릭 敎會라고 생각하였다. 비스마르크는 카톨릭 敎會가 로마교황청의 사주를 받는 국제적인 조직이며 반민족적인 세력이라고 여겼다. 비스마르크는 1872년 法令을 발표하여 카톨릭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그는 獨逸로부터 예수회를 추방하고 성직자의 정부비판을 금지하고 교회학교를 폐쇄하였으며 카톨릭 敎會의 처벌과 치리권을 법률의 제약을 받게 함으로써 國家 감독하에 두었다. 또 敎會로부터 혼인에 관한 업무를 빼앗아 國家에 넘기고 敎會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였으며 성직자 임명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스마르크는 의회내 자유당의 협력을 얻었다. 이러한 Preussen의 프로테스탄티즘과 군국주의에 반감을 갖고있는 獨逸 국내의 카톨릭 교회는 강력한 정치세력인 "Zentrum"(중앙당)이란 정당을 조직해 비스마르크와 대치하였다. 비스마르크 정부는 더욱 강력한 탄압정책을 써서 모든 수도원을 폐쇄하고 감독직의 수입을 박탈하며 敎會財産을 國家가 몰수하게 하였다.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에 로마교황은 무효를 선언하고 카톨릭 교도들에게 복종하지 말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879년 제정된 보호관세법에 자유당이 반대하자 비스마르크는 Zentrum의 카톨릭세력과 손잡고 자유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당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는 카톨릭 중앙당과 자유당 모두 그에 협력하였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獨逸 카톨릭 敎會와 일반 國民들이 반정부적 태도를 취하자 비스마르크는 문화장관 팔크를 파면하고 王立敎會 法務局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 임명이나 교육문제

1) Vgl. Ekkhardt Stein, Staatsrecht, 14.Aufl. 1993, S.258.

를 다시 감독들의 권한으로 되돌렸다. 결국 1885년 비스마르크는 교황 Leo XIII세와 정치적 화해를 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의 소위 文化鬭爭이라는 것도 결국은 獨逸 내셔널리즘의 종교정책의 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중세 말 근대 초에 걸쳐 유럽 각국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民族主義를 저지해온 로마 카톨릭 세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國家權力の 강제력을 통하여 政教分離의 原則을 살리지 못하고 敎權을 억압한 데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獨逸 改新敎會의 경우 비스마르크 제국하에서 카톨릭 敎會와 같이 탄압도 받지 않고 國敎의 지위를 누렸지만 카톨릭 敎會와 달리 종교 개혁에서부터 19C까지 각기 다른 지방 敎會로 존재하여 통일된 중앙기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1848년 MLuther의 고향 Wittenberg에서 처음으로 독일 개신교 총회 (Deutsche Evangelische Kirchentag)이 열리고 1903년 獨逸 改新敎 會議 (Deutsche Evangelische Kirchen Konferenz)가 소집되었을 뿐이었다.

5) Weimar 共和國에 있어서의 敎會와 國家

Weimar 共和國 성립내용이나 國家秩序의 구조상 특징이 세계대전이라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굴절과 그에 따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Weimar 憲法の 統治構造가 二元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社會的 基本權의 보장과 같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憲法規範과 憲法現實의 간극이 크고 결국에는 '民主主義의 Experiment' 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Weimar 共和國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Weimar 憲法 秩序에 있어 國家와 敎會의 관계는 1848년 Frankfurt 憲法에서 처음 시도되었지만 정치정세의 반동화로 실패하고만 國家와 宗教의 分離라는 原則을 관철한 것이었다. 즉 모든 종교 단체는 國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정 종교의 특권이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eimar 憲法の 政教分離 原則은 1848년 市民革命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반면 제 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한 獨逸帝國의 붕괴로 인해 이제까지 獨逸帝國의 國敎로 보호받고 군림했던 改新敎會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지방적 獨逸 지방교회(Landeskirche)가 해체되었지만 이에 대한 유대의식은 강하게 남아있었고 敎會 지도자들은 Weimar 共和國의 주도세력이었던 사민당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당시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공산당이나 민주당¹⁾에서는 敎會의 특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었고 카톨릭 세력은 그들의 기관이나 다름없었던 중앙당을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결국 Weimar 憲法制定의 과정에서 다수의 사민당이 카톨릭의 중앙당과 敎會政策에 대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보수세력이 희망하던 국가교회도 아니고, 카톨릭 세력이 추구하던 國家와 敎會의 협력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민당이 주장했던 敎會와 國家의 엄격한 분리도 아닌 어정정한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eimar 憲法에서 敎會의 위치는 國民敎會(Volkskirche)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데²⁾ 제3장 제135조에서 141조에 이르기까지 國家와 敎會의 관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敎會가 누리던 국가적 차원의 특권이 줄어든 반면 敎會가 國家에 예속되었던 관계를 벗어남으로써 독립적인 지위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³⁾

Weimar 憲法에서 敎會의 위치는 두 가지 원칙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敎會와 國家의 분리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國家敎會의 전통과 다수 국민이 기독교인이라는 현실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敎會가 더 이

1) 1918년 Preissen 문교장관 이었던 호프만(Adolf Hoffmann) 같은 사람은 독립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학교에서의 의무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금지시키고, 종교과목을 시험과목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학교교육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 Vgl. Karl Kupisch, Kirchengeschichte, 1975, S.81ff.

3) 특히 Weimar 헌법 제 137조는 1849년 Paulskirchenverfassung의 제 147조 규정과 같이 (Keine Religionsgesellschaft genießt vor anderen Vorrechte durch den Staat; es besteht fernerhin keine Staatskirche)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Es besteht keine Staatskirche)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 국가적 기관이 아닌 法人體에 불과하게 되었지만 지방정부를 통하여 教會稅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었고 신학대학도 국가예산으로 운영 되도록 보장되었다. 國民教會로서 새 모습을 갖춘 教會는 나름대로 民主化의 길을 걷게되어 代議原理가 교회 조직에도 반영되게 되었고 1922년 조직된 獨逸 教會 聯合(Deutsche Kirchenbund)은 각 지방 教會들의 통일 조직이 아닌 民主的 協議體로 발전해 나갔다.¹⁾

6) 나찌하의 獨逸 教會와 國家

獨逸에서 나찌 독재체제는 연속성을 결한 돌연변이적²⁾이었기 때문에 教會와 國家의 관계도 비정상적이었다. 전통적으로 國家教會로서 국민의 95%신도를 갖고 있었으며 Weimar 共和國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獨逸教會가 나찌스의 반기독교적 본질이나 비민주적 이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경계적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나찌등장의 초기 1920년 25개에 달하는 국가사회주의 노동당(NSDAP)정책이 발표되었을때 다음과 같이 國家와 教會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國家안에서 요구한다. 단지 종교가 國家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고, 게르만 民族의 풍속과 도덕감정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우리 당은 어떤 특정한 교파나 신앙에 구애됨이 없이 긍정적 기독교(Positive Christentum)입장을 취한다.” 일찌기 천명된 ‘宗教的 信仰의 自由’ 보장과 ‘긍정적 기독교 입장’이라는 친기독교적 정당정책이 나찌에 대한 회의적 비판을 둔화시켰다. 나찌당원들이 성서처럼 여겼던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나 로젠베르크의 [20세기의 신화]같은 책이 담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나 기독교를 혐오했던 히틀러, 괴켈스, 헤스같은 나찌의 중심

1) 이삼열, 나찌 하 독일 교회와 국가, in: 국가 권력과 기독교, 1982.

2) Gerhard Leibholz같은 사람은 나찌의 국가사회주의가 현대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로 20세기의 전혀 새로운 특별한 현상이고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ders., Strukt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Karlsruhe 1958, S.225.

인물들에 대해서 집권 초까지만 해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히틀러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카톨릭의 세례를 받고 敎會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버린지 오래였고 젊은 시절부터 니체나 다윈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반유대주의 사상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뿌리가 같은 이민족의 종교로서 民族主義 나찌즘에 방해가 되는 쓸모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당시의 나찌당원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獨逸 패배가 막시스트와 유대인 및 카톨릭 敎會의 연합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찌당의 창당에서부터 1933년 집권 전까지 히틀러는 공산당이나 사회민주당 및 자유민주당등의 반 기독교적 정책에 불안감을 갖는 기독교인들에게 ‘공정적 기독교’ 입장이라는 선전으로 지지와 환심을 사는 이중정책을 썼다. 국가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적 정치선동에 이끌린 많은 기독교인들은 히틀러가 비스마르크와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 國家와 民族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히틀러는 國家權力의 장악을 위하여 敎會勢力의 신뢰와 환심을 살만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심으로는 “파시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敎會와 우선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獨逸에서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보듯 반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獨逸 民族이 유대교나 기독교의 연약한 道德을 믿어서는 안되며 民族의 핏속에 들어있는 신에 대한 영웅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영도자에 대한 절대복종과 일사불란한 전국민의 통제를 國家 運轉의 이상형으로 생각한 나찌는 자율성이 강한 獨逸敎會를 지배하기 위해 1933년 ‘독일적 그리스도인 신앙운동(Deutsche Christen Glaubensbewegung)’을 전개해 나갔다. Weimar 共和國 憲法에 따라 28개의 독립된 지방교회(Landeskirche)로 분할되어 있던 獨逸敎會를 전국 지도자(Reichsleiter)라는 지도체제를 통해 나찌 조직 원칙에 따라 民族敎會로서의 통일된 제국 교회를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였다. 호센펠더(Hossenfelder)를 지도자로 한 ‘독일적 그리스도인’ 운동은 結婚, 家庭, 血統, 國家, 民族 그리고 權勢(Obrigkeit)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의 질서이므로 이를 성스럽게 받들어

야한다고 역설하면서 國家社會主義야 말로 긍정적 기독교의 실체라고 선전하는 등 기독교와 나찌이념을 동일시하였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은 후 1933년 7월 카톨릭세력의 정치적 결합체인 중앙당(Zentrum)을 해체했을 뿐만아니라 나찌정권을 교황청으로 하여금 공인하는 결과를 가져온 合議書(Konkordat)를 작성하는 한편 나찌당을 유일한 政黨으로 선포하였고 8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타계와 동시에 수상직과 대통령의 직을 겸하는 法을 공포하였다. 이처럼 독재권력을 바탕으로 '제3제국'을 건설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독일적 그리스도인' 운동을 통해 教會組織을 나찌화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기독교적 정책선전으로 기독교인들을 혼미케 하였다. 히틀러의 나찌정권은 그들의 國家社會主義 이념과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융화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현실 정치상의 필요 때문에 표면적으로 적대화하는 일은 피했다. 1933년 4월 제국총회를 통해 帝國教會가 정식으로 결성되고 독일적 그리스도인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있게 되자 教會法을 개정하고 나찌 친위대의 조직과 힘을 빌려 뮐러(Ludwig Mueller)목사를 帝國主教(Reichsbischof)로 세워 教會組織을 정권 아래 완전히 예속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찌화된 帝國教會와 새로운 教會法¹⁾ 및 영도자 숭배 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신개혁주의 운동(Jungreformatorische Bewegung)을 이끌던 니뮐러(Martin Niemöller)목사²⁾가 성서와 신앙고백에만 충실히 따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목사 동맹(Pfarrernotbund)'에 가입할 것을 전국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서신을 통해 호소하였고 이에 가입한 목사의 수는 帝國教會의 통솔에 위협이 될 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³⁾ '긴급 목사 동맹'에 가입한 목사들에

1) 특히 교회법의 아리아(Arier) 조항은 유대인의 목사직 수행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아리아족만이 성직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892년에 태어난 Niemöller목사는 1933년 초 나찌의 영도자원리(Führerprinzip)와 유대인정책을 비판했던 D. Bonhoeffer 교수와 함께 9월 6일 제정된 교회법의 아리아조항(Arierparagrafen)에 대한 반대문을 작성해 퍼뜨렸다.

3) 1933년 9월 21일자로 발송된 니뮐러의 서신에 1주일도 안되어 2천여명의 목사들이 가입신청을 내었고 34년 1월에는 2천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던 '독일적 그리스도인' 운동을 압도하는 7천여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한 탄압이 가혹해지자 34년 5월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총회가 소집되어 칼 바르트(Karl Barth)教授가 기초한 “발멘 신학 선언”을 채택하였다. 히틀러의 독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치적 저항을 하지 않던 고백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를 목사들에게 강요당하자 143명의 대표들이 모여 帝國教會를 더 이상 인정치 않고 고백교회의 기구를 교회 지도부로 삼을 것을 결의하였다. 고백교회의 세력 확대로 帝國教會를 통한 교회지배가 어려워지자 1935년 7월 히틀러는 새로운 法命을 만들어 교회장관직(Reichs-kirchenministerium)을 설치하고 한스 케를(Hans Kerrl)을 교회장관에 임명하였다. 종래의 帝國主教 중심의 운영 대신에 교회 운영 위원회(Kirchenausschuss)제도를 채택하여 여러 교파의 대표들을 위원회에 참여케 하였다. 그러자 교회 위원회에 참여문제를 놓고 고백교회는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참여파는 ‘독일 루터교회 협의회(Rat der Evangelisch-Lutherische Kirche)’를 조직하여 참여 속의 개혁을 주장하고 반대파는 교회장관을 이용한 국가의 교회 정책에 말려들 수 없음을 강조하며 더욱 강력한 저항을 계속해 나갔다. 1937년 帝國教會 운영위원회 마저 해체되고 교황 피우(Pius) XI세가 ‘애타는 근심으로(mit brennender Sorge)’라는 敎書(Enzyklika)를 통해 나찌의 國家, 民族, 血統의 우상화 이데올로기와 종교탄압을 비판하자 나찌정권의 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더욱 강화 되었다.¹⁾

39년 세계 제 2차 대전이 발발할 당시 8천만 獨逸 國民 가운데 96%가 기독교인이었고 3백만의 나찌당원 중 대다수가 教會에 등록된 교인이었다. 전쟁기간 중 히틀러는 教會에 대한 탄압의 중지를 명령하였고 종교탄압에 항거하던 教會들도 전쟁이나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나찌의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말았다. 오히려 전쟁이 민족의 생존에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논리에 반대할 다른 신앙고백을 갖지 못한 당시의 獨逸 기독교인

1) 37년 니뮐러 목사를 비롯한 800여 명의 고백교회 목사와 교인 및 수 많은 카톨릭 교회 신부들이 체포되어 감옥과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신학 교육기관과 교회출판사가 폐쇄되고 각종의 교회집회가 비밀 경찰에 의해 통제되었다.

들과 많은 수의 敎會 지도자들은 나찌 獨逸軍의 폴란드 및 체코 점령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國家와 民族을 '살리기 위한 전쟁'을 지지하는 설교를 했다. 2차 대전 중 많은 獨逸 기독교인들과 敎會 지도자들이 國家와 民族에 대한 충성¹⁾과 人間과 平和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침묵할 때에 몇몇 소수만이 용기 있는 저항을 행했다. 나찌가 체코를 침공했을 때 프라하의 후로마드카(Hromadka)敎授에게 양심의 괴로움을 편지로 고백하고 스위스로 망명했던 칼 바르트(Karl Barth), 39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에서 獨逸로 귀국해 나찌에 저항했던 본 뢰퍼(Dietrich Bonhoeffer)²⁾, 그리고 41년 나찌가 정신박약자 10만명을 안락사(Euthanasie) 시키려 하자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문스터의 갈렌(Graf Galen) 主教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7) Bonn 基本法 하에서의 敎會와 國家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나찌 치하의 반인륜적이고 비기독교적 지배로부터 해방된 獨逸社會의 전후 복구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세력은 敎會였다. 1945년 연합교회, 루터교회 및 개혁교

1) 전쟁에 직면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볼셰비키즘에 대한 투쟁(Kampf gegen den Bolschewismus)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매몰되어 나찌독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충성 서약 문제와 관련하여는 오히려 1914-1918년 1차 대전 때로 돌아가 전통적인 국가에의 예속적 태도를 취했다. Vgl., Karl Dietrich Bracher, Die deutsche Diktatur, 6.Aufl., 1983, S.418.

2) Bonhoeffer가 Reinhold Niebuhr에게 쓴 글 가운데 Niebuhr가 "기독교의 순교가운데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 (zu den schoesten Auesserung christlichen Maertyertums)" 라고 지적한 부분을 재인용하면; - Ich werde kein Recht haben, am Wiederaufbau christlichen Leben in Deutschland nach dem Krieg teilzunehmen, wenn ich nicht die Pfruefungen dieser Zeit mit meinem Volk teile. Christen in Deutschland werden sich der furchtbaren Entscheidung gegenueberstehen, entweder die Niederlage ihrer Nation zu wuenschen, damit christliche Kultur ueberlebe, oder den Sieg ihrer Nation zu wueschen und damit unsere Zibilisation zu zerstoeren. Ich weiss, welche dieser Moeglichkeiten ich waehlen muss; aber ich kann diese Entscheidung nicht faellen und selbst in Sicherheit bleiben." Gerhard Leibholz, Dietrich Bonhoeffer als ein Vermaechtnis des 20. Juli 1944, in: FS fuer Fritz Eckert, 1976.

회 등 21개 회원 교회로 구성된 獨逸 改新教會(EKD)가 설립되고 산하 여러 기관과 위원회를 두어 국민생활에 뿌리 내리는 民衆教會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48년에는 Eisenach총회에서 教會 基本法을 제정하였고 EKD에는 8개의 東獨 教會를 포함한 28개의 주교회가 소속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9년부터 동부 獨逸의 경건과 귀족의 자손이었고 대전 중 러시아에서 전쟁포로가 되었던 타덴 트리글라프(Reinhard von Thadden Trieglaff)의 지도 아래 “교회의 날 (Kirchentag)”이라는 옛 이름으로 다시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獨逸에서 일어난 새로운 활력은 대부분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후 獨逸 教會의 일차적 관심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박탈된 종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일반 國民에게 종교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人間 尊嚴性에 대한 국가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강조되는 가운데 기독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獨逸에서도 기독교적 이념을 가진 政黨들이 출현하였다.” 특히 남부독일의 Bayern, Wurtemberg, Baden주 등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독교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1948/49년에 걸쳐 CDU(기민당)과 CSU(기사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특히 기민당은 獨逸 政黨 秩序 가운데 신앙적 차이를 극복하였고 정당 내에 기독교적이고 사회적이며 나아가 시민적 보수정과 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한 정당으로 구성되었다. CSU(Christlich-Soziale Union)는 Bayern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민주세력들이 Weimar 시대의 바이에른 국민당(Bayerische Volkspartei)을 계승한 정당이다. CDU의 정강(Ludwigshafener Grundsatz-programm) 제1조는 CDU의 정책이 人間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고

1) Vgl. Hans Maier, Staat und Kirche in Deutschland, in: Forster(Hrsg.), Das Verhaeltnis von Kirche und Staat, 1965, S.101 ff.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1949년 제정 공포된 獨逸 聯邦共和國 (Bundesrepublik Deutschland) 基本法(Grundgesetz)의 前文에서도 “독일 국민이 하나님과 인류 앞에 책임을 인식하고 (Im Bewusstsein seiner Verantwortung vor Gott und den Menschen)”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國家 창설의 기본인식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基本法 제 4조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信仰의 自由 (Glaubensfreiheit)와 고백의 자유(Bekenntnisfreiheit) 및 종교행위의 자유 (Freiheit der Religionsausübung)를 보장할 뿐 아니라 教會도 종교적 결사체²⁾로서 公法上的 團體로 인정되어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활동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法秩序 안에서 教會의 활동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또 제한되느냐의 문제는 憲法과 國家教會法 (Staatskirchenrecht)을 통해 규율된다. 제 2차 대전 후 國家와 教會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1955년 Loccum수도원에서 체결된 教會契約이다. Niedersachsen 州政府和 教會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공공복리를 추구함에 있어 교회의 공공성 위임의 내용과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교회 사이의 공공복리와 관련된 활동영역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충돌할 경우 法院의 司法作用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화된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³⁾ 改新教會가 연방정부와 체결한 첫번째 계약은 1957년 군주제도에 관한 계약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밀받침하기 위하여 의회는 ‘군주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하였다.

國家와 教會 관계에 있어 獨逸教會가 갖는 가장 특징적인 점은 教會가 國家를 통해 教會稅(Kirchensteuer)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⁴⁾ 教會도

-
- 1) Die Politik der CDU beruht auf dem christlichen Verstaendnis vom Menschen und seiner Verantwortung vor Gott. Die CDU will aus christlichem Glauben mit seinem Verstaendnis vom Menschen eine ethische Grundlage fuer verantwortliche Politik gewinnen.
 - 2) BVerfGE 83,341,345ff.
 - 3) K.Mueller, Der Loccumer evangelische Kirchenvertrag als Spiegel der staats- kirchenrechtlichen Lage in der Bundesrepublik, DoeV, 1955, S,421
 - 4) Vgl. H.Marre, Das kirchliche Besteuerungsrecht, in: Handbuch des Staatskirchen- rechts. Bd.2, S.30ff.

공공 단체로서 필요 재정을 國家 稅金과 같이 國民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敎會에의 소속여부는 전적으로 個人의 自由意思에 의해 결정되지만 敎會나 종교단체에 소속되면 과세권에 따라 소득세의 10분의 1 가량을 원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물론 敎會로부터 탈퇴할 경우는 종교세 납부의 의무에서 자유로와 진다.¹⁾ 이러한 공법상의 단체로서 지위는 소수 종교단체도 신청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國家와 敎會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상호간에 계약과 협의라는 법률적 기초를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 獨逸 憲法 제 7조 [Schulwesen]에는 모든 학교가 國家의 감독 아래 있으며(제1항), 교육수입자는 자녀의 종교교육 수혜 여부를 결정할 權利가 있고(제2항), 종교교육은 비신조 학교를 제외하고 공립 학교에 있어 필수 수업 과목이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²⁾ 獨逸의 學校法에 의하면 國家는 학교에 종교교육에 대해 위임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감독자의 역할을 행하고 각 州가 종교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文化高權을 통해 결정한다. 敎會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선교적차원에서 敎會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밖에 교회 재산의 보호나 문화재 관리, 장례 및 묘지의 관리관계, 종교적 축일의 결정 및 군목제도 등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카톨릭의 경우 Konkordat를 통해, 改新敎會의 경우 敎會契約(Kirchenvertrag)을 통해 대등한 보완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政敎條約에 의한 國家와 敎會의 관계는 政敎分離나 政敎一致라는 모델관념과 비교할 때 타협적 성격이 강하다. 敎會는 공법상의 단체로서 기능하지만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國家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는 통일독일에 있어서도 사회적 법치국가원리에

1) G.May, Der Kirchenaustrit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Öffentliches Kirchenrecht, 1963, S.3ff.

2) Vgl. Art.7 [Schulwesen] (1) Das gesamte Schulwesen steht unter der Aufsicht des Staates. (2) Die Erziehungsberechtigten haben das Recht, ueber die Teilnahme des Kindes am Religionsunterricht zu bestimmen. (3) Der Religionsunterricht ist in den öffentlichen Schulen mit Ausnahme der bekenntnisfreien Schulen ordentliches Lehrfach.

따른 헌법질서에서 정당화 기초를 확보하고 있다. 사회적 법치국가는 사회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단체들을 國家자신의 존립근거로 보고 이러한 단체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에 있어서도 무차별적인 分離主義나 적대적 極端主義는 배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찌의 역사적 과오를 경험한 獨逸 共和國은 기독교 國家로서 獨逸 教會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공복리를 비롯한 공동의 과제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規範的 制度保障을 통해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복(편), 國家 權力과 基督教, 1982.
- 서영일, 教會와 國家, 1984.
- 이민호, 近代獨逸史研究, 1991.
- 최종고, 國家와 宗教, 1983.
- D. Grimm u.a.(Hrsg.),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1993.
- E. Stein, Staatsrecht, 14.Aufl., 1993.
- F. Engels, Der deutsche Bauernkrieg, Berlin, 1973.
- G. Franz (Hrsg.), T.Muentzer, Schriften und Briefe, 1968.
- G. Leibholz, Strukt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1958.
- , Dietrich Bonhoeffer als ein Vermaechtnis des 20.Juli 1944. in : FS fuer Fritz Eckert, 1976.
- G. May, Der Kirchnaustrit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 Oeffent- liches Kirchenrechts, 1963.
- G. Oestreich,Verfassungsgeschichte vom Ende des Mittelalters bis zum

Ende des alten Reiches, 6.Aufl., 1986.

H. Maier, Staat und Kirche in Deutschland, in: Forster(Hrsg.), Das Verhaeltnis von Kirche und Staat, 1965.

H. Marre, Das kirchliche Besteuerungsrecht, in: Handbuch des Staatskirchen-rechts, Bd2, 1975.

K.-D. Bracher, Die deutsche Diktatur, 6.Aufl., 1983.

K. Kupisch, Kirchengeschichte, 1975.

K. Mueller, Der Loccumer evangelische Kirchenvertrag als Spiegel der staats-kirchenrechtlichen Lage in der Bundesrepublik, 1955.

M. Steinmetz (Hrsg.), Der deutsche Bauernkrieg und T.Muentzer, 1975.

R. Schuster (Hrsg.), Deutsche Verfassungen, 15.Aufl., 1982.

Zusammenfassung

Bei den Germanen oblag von alters her die Pflege der Religion dem Gemeinwesen und den Fuersten. Die Christianisierung begann bei den Goten. Gleich den Goten uebernahmen die meisten germanischen Staemme das Christentum arianischer Konfession und stellten sich damit ausserhalb der katholischen Glaubensgemeinschaft. Das beguenstigte die Bildung arianischer Sonderkirchen als Volkskirchen. Das Eigenkirchenwesen ist fuer die weitere staatskirchenrechtliche Entwicklung bedeutsam geworden.

Fuer die fraekische Kirche galten die fuer alle germanischen Staemme gemeinsame Zuege : Der Koenig ist der Herr der Volkskirche, errichtet Bistuerner, ernannt Bischoefe oder sichert sich wenigstens Einfluss auf die Bischofswahl und beruft die Synoden. Die Geistlichen werden zu Vasallen des Grundherren, die Bischoefe zu Vasallen des Koenigs. Dennoch unterschied sich die Christianisierung der Franken in einem wesentlichen Punkt von jener der anderen germanischen Staemme. Die Franken nahmen unter Clovis den katholischen Glauben an. Auch die anderen christianisierten germanischen Voelker traten im Laufe der Zeit zum katholischen Glauben ueber. Unter Karl dem Grossen fuerte die zunehmende Verflechtung zwischen Staat und Kirche. Nach der Teilung der roemisch-katholischen Kirche wurde ihr Monopol auf verbindliche Entscheidung aller Glaubensfragen in den Schatten gestellt durch den Anspruch der Landesherren, die Kirchenguehoerigkeit und damit auch den Glauben ihrer Untertanen zu bestimmen.

In der Mitte des 11. Jahrhunderts setzte sich eine kirchliche Reformbewegung durch. Von da an wurde der Papst aus einem Schuetzling des Koenigtums zu dessen Gegner. In d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Heinrich IV. und Gregor VII. erwies sich das Papsttum als eine dem deutschen

Koenigtum ebenbuertigte Macht. Zeitweise erlangte das Papstum die politische Fuehrung des christlichen Abendlandes.

Wesentliche Staatskirchenrechtliche Positionen wurden im Gefolge der Reforma- tion festgelegt. Die im Wormser Edikt von 1521 verhaegte Reichsacht ueber M. Lu- ther und seine Anhaenger hatte sich als undurchfuehrbar erwiesen. Das staatskir- chenrechtliche Gefuege wurde von Grund auf die Saekularisation kirchlicher Territorien und Besitztueemer umgestaltet, die sich von 1803 an vollzog. Die ersten Jahre des Bismarck-Reichs war gepraegt von Auseinandersetzung Bismarcks mit der katholischen Kirche. 1879 suchten und fanden Bismarck und Papst Leo XIII. einen Ausgleich.

Die Weimarer Republik blieb in kurzen Zeit ihrer Existenz weitgehend bestimmt von den Umstaenden ihrer Entstehung. Jene Mehrheit der Weimarer Nationalversamm- lung, welche das Reich in einen Volksstaat hatte umwandeln wollen, verlor im Laufe des Jahres 1919 zunehmend den politischen Rueckhalt im Volke. Das Weimarer Verfassungswerk stand schon nach einem Jahr in der Deffensive. Und die rasch um sich greifende Resignation, die Hitlers Berufung zum Reichskanzler zur Folge hatte, laesst die Etablierung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gimes bis heute als einen schicksalhaften Vorgang erscheinen.

Am Anfang der Nazi-Zeit hatten viele Kirchenfuehrer den Uebergang zum neuen Re- gime begruesst. Unter Berufung auf das Parteiprogramm war das >>positive Chris- tentum<< zur Grundlage des Kampfes gegen marxistischen Atheismus erkluert. Paral- lel zur staatlichen Gleichschaltung betrieb das Naziregime die politische und rassische Saeuberung der Kirche. In dem Augenblick der aeuusseren Gleichschaltung

von Staat und Kirche, die von grotesken Bekundungen einer voelkisch-national- sozialistischen Reform der christlichen Lehre begleitet war, fanden die

zersplit- terten Oppositionskraefte deutlichen Ausdruck. Z.B. Martin Niemoeller forderte alle Pfarrer auf, sich in einem Notbund zum Kampf gegen antijuedische personalpolitik in der Kirche. Und Dietrich Bonhoeffer hatte sich kritisch mit dem Fuehrerprinzip und der Judenpolitik auseinandergesetzt. Die Gewinnung einer Widerstandsposition in den Kirchen ist nur einzelnen Personen, nicht aber im grosseren Rahmen gelungen.

Der Nationalsozialismus brachte fuer alle einen furchtbaren Gewissenszwang bis hin zu der Frage, ob das Gewissen nicht eine Toetung des Diktators gebiete. Unter dem Eindruck dieser Erfahrungen baute das Grundgesetz die Glaubens- und Gewis- sensfreiheit, die von der Weimarer Verfassug nur in den Grenzen der allgemeinen Staatsgesetze gewaehrleistet worden war, zu einem Grundrecht ohne Gesetzes- vorbehalt aus.